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1237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123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소1174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김영보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4. 7.

판결선고 2023. 4.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소117472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4.경 피고로부터 하남시 C 소재 'D'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21. 4. 15.까지로 각 정하여 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 위 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
105,000,000원이고, 여러 번에 나누어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전대차계약 종료 무렵 추가로 1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E 잠원지점에 대한 2021. 11.
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m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① 2019. 4. 29.

15,000,000원, ② 2019. 5. 31. 30,000,000원, ③ 2019. 8. 12. 3,024,750원, ④ 2019. 9. 11. 2,000,000원, ⑤ 2020. 3. 16. 21,000,000원(늦게 지급한 것에 따른 이자 명목 1,000,000원 포함), ⑥ 2020. 3. 17. 5,000,000원, ⑦ 2021. 3. 11. 20,000,000원, ⑧ 2021. 3. 29.

5,000,000원, ⑨ 2021. 4. 1. 5,000,000원의 합계 105,024,75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⑩ 수표금액 5,000,000원인 자기앞수표 2매를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내지 ⑨ 기재 각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m 먼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외에 월 차임

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위 전대차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계좌로 2,750,000원, 1,750,000원, 3,750,000원, 1,000,000원, 2,200,000원, 500,000원, 2,700,000원, 3,250,000원 등의 액수를 종종 송금해 왔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③과 ④ 각 돈의 경우에는 전대차보증금 또는 권리금이 아니라 월 차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피고 또한 월 차임과 공과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m 한편, 원고는 2019. 4. 25. 수표금액 5,000,000원인 자기앞수표 3매를 발행받았는데, 그중 자기앞수표 2매의 최종 제시인이 'F'로 확인되었고, 위 F는 전대차 목적물인 위 점포를 소개한 사람으로 짐작되므로, 위 2매의 경우 소개료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m 또한 위 자기앞수표 3매 중 나머지 1매의 경우 최종 제시인이 기록상 명확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③과 ④의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 ⑤ 내지 ⑨ 각 돈의 합계액과 위 자기앞수표 1매의 수표금액을 더하면 105,000,000원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에 해당한다.

m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는 2020. 3. 14.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중 미지급 금액 56,000,000원을 연말까지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늦어도 2021. 4.경까지 보내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보낸 돈의 합계액 또한 56,000,000원(위 ⑤ 내지 ⑨ 각 돈의 합계액)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훈, 판사 윤웅기, 판사 이원중